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재가합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

###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5704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재가합1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123 판결

### 전문

원고(재심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김능철, 이고은, 이중섭

피고(재심피고) D 대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손주철, 양희진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3. 9. 7.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123 판결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으로부터 1,003,975,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의 (20)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로부터 288,968,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의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로부터 601,793,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의 (1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C으로부터 367,82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의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억 2,100만 원, 원고 B에게 8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0.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0. 6. 30.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123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2.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0. 12. 28. 원고들에게, 그 다음날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2011. 1. 10. 항소하였는데, 2011. 1. 26. 항소장각하명령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E의 허위진술(사실은 E이 원고들과 F 등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관련 검찰 조사 시 또는 공소장을 보고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을 증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E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E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E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법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15689호)에 관하여 검사가 2018. 6. 15. 공소권 없음(2017. 9. 20. 공소시효 완성)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이 있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정한 사유들,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위 불기소결정서에서 검사가 E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항 제7호의 요건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제1항 제7호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김은수, 판사 정수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 부산 기장군 G 답 1,689㎡

(2) H 답 506㎡

(3) I 답 340㎡

(4) J 답 1,183㎡

(5) K 임야 1,699㎡

(6) L 답 1,812㎡

(7) M 답 40㎡

(8) N 답 4,714㎡

(9) O 답 5,914㎡

(10) P 답 1,140㎡

(11) Q 답 5,689㎡

(12) R 답 787㎡

(13) S 답 1,997㎡

(14) T 답 1,904㎡

(15) U 답 3,524㎡

(16) V 임야 13평

(17) W 답 641㎡

(18) X 답 3,729㎡

(19) Y 답 6,218m<sup>2</sup>

(20) Z 답 9,871m<sup>2</sup>

(21) AA 답 2,609m<sup>2</sup>

(22) AB 답 2,106m<sup>2</sup>

2. AC 답 473m<sup>2</sup>

3. (1) AD 답 3,180m<sup>2</sup>

(2) AE 답 2,248m<sup>2</sup>

(3) AF 답 3,739m<sup>2</sup>

(4) AG 답 5,825m<sup>2</sup>

(5) AH 답 6,126m<sup>2</sup>

(6) AI 답 2,843m<sup>2</sup>. 끝.

